

단국대학교 대학원 공연예술학과 내규

I. 목적

본 내규는 단국대학교 대학원 공연예술학과의 효과적인 교육 및 운영을 위하여 단국대학교 대학원 과정의 학칙과 교과과정 및 학생지도 지침을 공연예술학과의 성격 및 교육여건에 맞게 확장·보완하고 함을 목적으로 한다.

II. 전공 분야

연극이론, 연극비평, 연극사, 연극제작, 연출, 연기, 극작

III. 대학원 과정의 운영

대학원 과정의 전반적인 운영·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학과 내에 대학원 교과과정 위원회와 논문지도 위원회를 설치한다.

1. 대학원 교과과정 위원회

제1조(명칭 및 목적) 이 위원회는 대학원의 공연예술학과 교과과정 운영을 위한 상설기구로서, 공연예술학과 교과과정위원회라 칭하며(이하 위원회) 공연예술학과 교과과정위원회 목적은 학과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과 정책을 논의하고 심의·결의함에 있다.

제2조(구성) 위원회 구성은 공연영화학부 연극과 뮤지컬 전공 전임교원으로 하며 위원장은 대학원 주임교수가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 기능은 대학원으로부터 위임받아 아래 사항을 심의 결의한다.

1. 학과 내 전공(설치 및 폐지, 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
2. 학생선발, 교육과정 및 수업, 학위 수여에 관한 사항
3. 연구(논문)지도, 자격시험 및 학위 논문에 관한 사항
4. 이 위원회의 내규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공연예술학과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전임교원 임기와 같으며, 공연예술학과 주임교수의 임기는 제2조와 같다.

제5조(회의) 본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회의를 소집 할 수 있으며, 또한 위원의

요청에 의해 소집할 수 있다. 매 학기 1회 이상 정기 회의를 개최하며, 전 위원이 출석하여야 성원이 된다.

2. 논문지도 위원회

- 1) 구분 : 대학원 학생의 학위논문지도를 위하여 석사과정 논문지도위원회 구성한다.
- 2) 구성 : 석사 학생의 논문제출 자격이 인정된 직후 석사과정은 각 학생당 지도교수를 포함한 3인의 전임교원과 논문 심사위원장은 지도교수를 제외한 내부 심사위원 중 1인으로 한다.

IV. 수업

1. 교과과정

교과과정의 개편은 대학원의 교과과정 개편요청과 학과 전임교수의 건의나 그 외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1개 학기 이전에 공연예술학과 교과과정위원회의를 개최하여 이를 검토하여 결정하고,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2. 강좌개설

각 학기별 공연예술학과는 석사 3학점 3과목을 개설한다.

3. 수강신청

대학원생은 학기 당 함께 3과목(9학점)을 지도교수와 상의하여 수강신청 할 수 있다.

4. 보충과목 이수

보충과목 이수 대상자는 학과 주임교수에게 학위 하위과정 성적표를 제출하여야 하고, 주임교수는 대학원생이 이수한 과목과 공연예술학과 석사과정의 교과과정을 비교·확인하여 결정한다. 보충과목의 경우 공연예술학과 교과과정위원과 1차 상의한 후, 최종 주임교수 허가에 의하여 이수한다.

*보충과목 인정학점 및 이수기준

- | |
|---|
| <p>① 본교 대학원(특수 대학원 포함) 타 대학교 대학원(특수 대학원 포함) 동일전공 석사과정을 졸업한 원생은 동일과목으로 인정되는 과목에 대하여 학점취득으로 인정한다.</p> <p>② 본교 대학원(특수 대학원 포함) 타 대학교 대학원 (특수 대학원 포함) 동일계열 석사과정을 졸업한 원생은 최하2과목(6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p> <p>③ 본교 대학원(특수 대학원 포함) 및 타 대학교 대학원 (특수 대학원 포함) 비전공 석사과정 졸업한 원생은 보충과목 8과목(24학점)중 최하 4과목(12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p> |
|---|

※ 외국에서 대학원을 이수한 경우 입학 시 한글로 번역되어 제시한 석사과정 성적표를 기준으로 하여 총

5. 교·강사 위촉

교·강사의 자격은 전임교수 및 전공분야별 권위가 인정된 전문인으로 위촉한다.

V. 대학원과정 이수절차 및 학위취득 요건

1. 석사과정

석사과정에 입학한 대학원생은 학위 취득 시까지 다음과 같은 제반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연구계획서의 제출

각 대학원생은 첫 학기 등록 시에 자신의 전공분야 및 학위논문과 연관된 연구의 방향, 연구계획 개요 등을 간략하게 기술한 연구계획서를 공연예술학과 교과과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지도교수의 결정

각 대학원생은 첫 학기 말 지도교수를 신청하여야 하며, 학생의 의사를 참고하여 학과의 방침 및 사정에 따라 또는 공연예술학과 교과과정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각 학생의 지도교수를 결정한다. 이때 각 대학원생은 자신의 전공분야 및 학위논문과 연관된 연구의 방향, 연구계획 개요 등을 간략하게 기술한 연구계획서를 지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교과목 이수

가. 석사과정 수료에 필요한 교과목은 공연예술학과의 전공과목으로 개설된 교과목과 지도교수의 추천에 의하여 주임교수가 인정하는 타 학과의 대학원 교과목 중에서 이수할 수 있다. (단 6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석사과정 수료에 필요한 교과 학점 수는 24학점 이상으로 한다.

4) 외국어시험 및 종합학력시험

가. 외국어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2개 학기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나. 내국인 대학원생에 한하여 공인어학성적 및 해외 수학(연수)로 인한 면제 신청 시, 영어 성적 및 영어권 국가 이외에 추가로 다른 언어 선택이 가능하다. (예: 독어, 불어, 중어, 일어, 한문, 노어, 서반아어 중 복수선택 가능)

다. 나.항의 예외를 제외하고 대학원에서 실시하는 외국어 시험과목을 영어, 한국어 2개 과목만으로 한정한다.

라. 종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4학기 이상을 수료하고, 교과학점 36학점이상을 득한 학생에 한하여 논문 제출자격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마. 종합학력시험의 면제기준은 다음과 같다.

- * 학술지 등급 :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지(혹은, 그 이상)
- * 대체기준 논문(발표논문 포함) 편수 : 석사과정 1편
- * 저작 역할 : 주저자

- * 게재인정 일자 : 대학원 입학일 이후
- 바. 종합학력시험은 필기시험으로 시행하며, 합격점수는 70점 이상으로 한다.
또한, 지도교수 과목은 1개 이상 선택할 수 없다.
- * 석사과정 : 수강 과목 중 2개 과목

5) 석사학위논문 제출자격

- 가. 석사학위논문 제출자격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나. 석사과정 수료(예정)자에 한한다.
- 다. 논문 심사를 받기 전, 국내 학회지(등재후보지 이상)에 논문 등재 내지 학술발표 1편 이상 또는 외국 학술지의 경우, 등재된 Scopus지 이상의 학술지에 논문 1편 이상을 게재하고 게재 증빙 서류를 주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박사과정

공연예술학과는 박사 과정이 없음.

- 1) 연구계획서의 제출
- 2) 지도교수의 결정
- 3) 교과목 이수
- 4) 외국어시험 및 종합학력시험

VI. 논문의 작성

학위논문의 작성 · 심사 · 제출 등에 관한 제반내용은 단국대학교 대학원 학위수여 규정에 의하여 진행한 다.

1) 학위과정

- 가. 공연예술학과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위논문, **연구논문** 이외에 학위청구 작품 중 하나를 선택하여 학과 내규로 문서화 한 후,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 나. 선택한 취득방법을 일부 또는 전면 수정하고자 할 경우, 대학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 변경 시행한 다.
- 다. 학위취득과정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이지만 사유서 첨부 후, 주임교수의 승인을 득할 경우 3학기 말까지 대학원장의 승인 하에 변경할 수 있다.

2) 학위논문 연구계획서(proposal)제출 및 승인

학위논문을 작성하려는 대학원생은 그에 앞서 지도교수에게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학원생은 각 과정 제 2차 학기부터 지도교수에게 연구계획서를 제출하고,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연구 및 논문을 작성한다.

3) 학위논문 초안제출

공연예술학과 교과과정위원회에서 학위논문 제출 자격이 인정된 학생은 논문 심사 예정일로부터 한 달이 전에 목차와 초록이 완성된 내용의 논문초안을 공연예술학과 논문지도위원회에 제출하여 검토를 받은 후, 논문지도 위원회의 지도에 따라 수정 및 보완을 하고 기타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학위 논문 심사

* 심사위원회 구성

가. 주임교수는 학위논문 심사신청자의 전공과 관련된 분야를 전공하는 교원 또는 학계의 권위자 중에서 지도교수와 협의하여 3인을 추천하고 대학원장의 승인에 의해 심사위원회를 진행한다.

나. 심사위원 추천 기준

- (1) 교내의 경우 전임교수 및 비 전임교수를 원칙으로 하며 교외 심사위원의 경우 4년제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자 또는 박사학위소지자를 원칙으로 하며, 해당 전공분야에서 연구업적이 많은 학계의 권위자도 가능하다.
- (2) 교외인사는 1개 학기당 1편 이상 심사할 수 없다.
- (3) 논문지도교수는 당연직 심사위원으로 추천된다.
- (4) 논문지도교수는 심사위원장이 될 수 없다.

다. 심사의 진행

- (1) 심사횟수 : 석사 학위논문의 심사는 예심 1회, 본심 1회를 원칙으로 하여 2차로 최종 종결하되 특별한 경우 1회의 심사를 더 할 수 있다.
- (2) 심사방법 : 심사는 대학원생의 논문발표와 논문 심사위원의 학위논문 심사로 진행되며 석사학위 심사는 심사위원 전원이 합격(매우우수 / 우수 / 만족)으로 판정하였을 경우 최종 합격으로 인정한다.

4) 학위 논문 대체 심사

* 대학원 학위논문의 제출방법

가. ‘논문중심’의 학위청구 논문과, 연구논문, ‘작품중심’의 학위청구 작품 중 선택할 수 있다.

나. ‘작품중심’의 학위청구 작품의 방법은 ‘논문중심’의 학위청구논문과 형식과 방법에서 기본적으로 동일하며 세부 규정은 다음과 같다.

- (1) 대학원 재학 중 제작한 연구자 작품을 기반으로 개인공연(석사학위청구 공연 명시)을 공식 인정된 공연장에서 개최하고, 해당공연 ‘프로그램’을 반드시 제출한다.
- (2) 개인공연의 경우, 연기 및 스텝일반의 경우 학사지도 및 심사가 불가능하므로, 공연 연출과 극작(극작은 공연되어야 인정함)의 경우만 해당된다. 연기자나 극작가가 연출을 겸하여 실행하는 경우는 가능하다.
- (3) 작품 심사는 예심과 본심으로 구성하며, 공연예술학과 교과과정위원회에서 예심을 통과한 작품만 외부 학위 공연이 가능하다. 예심은 반드시 학교 내에서 심사위원 전원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어야 한다.

- (4) 시기는 졸업 자격을 갖춘 학기에 발표한다.
- (5) '작품중심'의 학위청구 작품 연구자는 작품을 이론적으로 정리한 '소논문'을 제출해야한다.
- (6) '작품중심'의 학위청구 작품에 관한 소논문은 대학원 논문규정에 준하며 형식과 분량은 공연예술학과 교과과정위원회에서 조정 결정한다.
- (7) 학위청구 작품 연구자는 공연예술학과에 학위청구 작품 프로그램이 포함된 소논문과 관련 파일을 제출하여야 하며, 학과에서는 10년간 보관한다. 단, 중앙도서관 제출 및 학위논문 온라인 등재는 생략한다.
- (8) 학위취득과정 중 연구논문을 선택했을 경우 39학점(전공 30학점, 연구지도 9학점)을 이수해야 하며 평균 80점 이상이어야 한다.
- (9) 추가 취득하는 6학점은 지도교수의 과목 또는 지정하는 과목임.
- (10) 추가 취득하는 6학점은 80점 이상이어야 한다.
- (11) 연구논문은 학과에서 3년 동안 보관 이후 폐기할 수 있다.

VII. 기타

- (1) 공연예술학과 내규는 대학원 학칙에 의거하여 작성되었으며, 본 내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① 대학원 학칙, ② 대학원 시행세칙, ③ 학과 학사운영 내규, ④ 관행, ⑤ 일반상식 순으로 적용한다.
- (2) 내규의 변경이 요구될 시에는 지체 없이 교과과정위원회와 주임교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결정된 후에 공연예술학과 교수들과 대학원생들에게 공지하여 학사일정 관리 및 대학원 학문연구 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 (3) 공연예술학과 학사운영 내규이므로 대학원에 보고할 의무가 없으므로 교과과정위원들의 날인을 필한 후 학과에 보관하여 적용한다.

부 칙

- 1. 본 내규는 대학원 공연예술학과에 적용한다
- 2. 본 개정 내규는 2018. 03. 01부터 대학원 공연예술학과 학사운영 내규로 시행한다.